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996. 4. 19.

교육사회위원회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4월 8일

○ 회부일자 : 1996년 4월 8일

3.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운영위원회 설치특례

- 소규모학교(6학급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이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다만,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음.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현장 및 규칙의 제·개정
 - 교복,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요청 교원 선정
 - 기타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등
- 회의소집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안건의 제출, 발의는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5. 검토보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 1항의 규정중 "학생의", "교원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임

조례안 제9조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타 법률과와 관계를 비교하여 각호 사항의 검토가 요구되며,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조례안 제20조 학교内外의 자생조직에 대한 규정중

단서 규정인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자생조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1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함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후 학교 위원회 규정이 정하여지는 것으로 볼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에 대한 최초의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본 조례안 규정에 최초의 주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구성시기 및 조례안 제출시기와 현실간의 불부합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6. 개정 조례안 : 별 첨